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(6급 2명)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 명(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 명)은 <u>2024년 5월 31일</u> 까지 존 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5월 31일</u> ----- -----.